

FORM PTO-1595

Doc et No. 55859/S1187

RECORDATION FORM COVER SHEET PATENTS ONLY

Mail Stop Assignment - Recordation Services
Director of the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P.O. Box 1450
Alexandria, Virginia 22313-1450

Post Office Box 7068
Pasadena, CA 91109-7068

Commissioner of Patents and Trademarks: Please record the attached original documents or copy thereof:

1. Name of conveying party(ies): Sein Electronics Co., Ltd. Additional name(s) of conveying party(ies) attached: NO		2. Name and address of receiving party(ies): Name: GenExel-Sein, Inc. Street Address: No. 133-3, Pyungchon-dong, Dongan-ku, Anyang-si, Kyungki-do, Korea			
3. Name of conveyance: ☐ Assignment ☐ Merger ☐ Security Agreement ☒ Change of Name ☒ Other: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Registration w/English translation Execution Date: September 14, 2005		Additional name(s) & address(es) attached? NO			
4. Application number(s) or patent number(s): If this document is being filed together with a new application, the execution date of the application is: <table border="0"> <tr> <td>A. Patent Application No.(s)</td> <td>B. Patent No.(s) 5,662,092</td> </tr> </table> Additional numbers attached? no				A. Patent Application No.(s)	B. Patent No.(s) 5,662,092
A. Patent Application No.(s)	B. Patent No.(s) 5,662,092				
5. Please return the recorded document and address all correspondence to: CHRISTIE, PARKER & HALE, LLP P.O. Box 7068 Pasadena, CA 91109-7068 Attention: D. Bruce Prout		6. Total number of applications and patents involved 1 7. ☐ Total fee enclosed (37 CFR 3.41): \$ 8. ☒ Any deficiency or overpayment of fees should be charged or credited to Deposit Account No. 03-1728, except for payment of issue fees required under 37 CFR § 1.18. Please show our docket number with any credit or charge to our Deposit Account.			
10. ☐ Explanatory letter is enclosed.					
9. Signature: Date: January 17, 2006 I hereby certify that this correspondence is being facsimile transmitted to the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on <u>Jan 17 2006</u> (Date) Signature <u>[Signature]</u> Typed or printed name of person signing Certificate <u>D. Bruce Prout</u> By <u>[Signature]</u> Name: D. Bruce Prout 626/795-9900					
Total number of pages including cover sheet, attachments, and document:			26		

CH \$40.00 031728 5662092

700237536

PATENT
REEL: 017198 FRAME: 0361

Certified No.	002904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REGISTRATION Commercial Registry Office Suwon District Court	
Registered No.	134111-0030316		
Name of Company : Sein Electronics Co., Ltd. GenExel-Sein, Inc.		Amended on September 9, 2005 Registered on September 14, 2005	
Announcement : Carried in Maeil Business Newspaper		Amended on February 4, 1999 Registered on	
Amount Per Share : 500 won		Amended on March 4, 2000 Registered on March 4, 2000	
Total Number of Shares which may be issued by the Company : 50,000,000 shares		Amended on March 4, 2000 Registered on March 4, 2000	
Total number of Shares issued and the Kinds and Number of them	Total Amount of Capital	Amended on November 14, 2005 Registered on November 17, 2005	
Common shares : 38,412,884	19,206,442,000 won		
Date of Company Establishment : January 19, 1990			

This is a certified copy of the original.

December 13, 2005

Yong-Jin PARK
 Registry Officer
 Commercial Registration Section,
 Suwon District Court

This is a translation of an abstract of Original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Registration. Details of the directors and ownership of shares are omitted

등기번호	002904
등록번호	134111-0030316

등기부 등본 (말소사항 포함)

상 호	세인전자 주식회사	변경 등기
	제넥센세인 주식회사	2005.09.09 변경 2005.09.14 등기
본 점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133-3	1992.10.01 변경 등기

광고방법	서울시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1999.02.04 변경 등기
------	------------------------------	---------------------

1주의 금액	금 500 원	2000.03.04 변경 2000.03.04 등기
--------	---------	--------------------------------

발행할 주식의 총수	50,000,000 주	2000.03.04 변경 2000.03.04 등기
------------	--------------	--------------------------------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자본의 총액	변경연월일 등기연월일
발행주식의 총수	6,600,000 주		2000.03.17 변경
보통주식	6,600,000 주	금 3,300,000,000 원	2000.04.11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7,200,000 주		2001.03.24 변경
보통주식	7,200,000 주	금 3,600,000,000 원	2001.03.27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7,203,612 주		2001.05.25 변경
보통주식	7,203,612 주	금 3,601,806,000 원	2001.06.04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7,212,792 주		2001.05.28 변경
보통주식	7,212,792 주	금 3,606,396,000 원	2001.06.04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7,214,533 주		2001.05.29 변경
보통주식	7,214,533 주	금 3,607,266,500 원	2001.06.04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7,259,097 주		2001.06.14 변경
보통주식	7,259,097 주	금 3,629,548,500 원	2001.06.18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7,286,059 주		2001.06.15 변경
보통주식	7,286,059 주	금 3,643,029,500 원	2001.06.18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7,287,930 주		2001.06.16 변경
보통주식	7,287,930 주	금 3,643,965,000 원	2001.06.18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7,299,624 주		2002.03.13 변경
보통주식	7,299,624 주	금 3,649,812,000 원	2002.03.20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11,299,624 주		2003.12.09 변경
보통주식	11,299,624 주	금 5,649,812,000 원	2003.12.09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13,360,624 주		2005.07.16 변경
보통주식	13,360,624 주	금 6,680,312,000 원	2005.07.18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15,612,561 주		2005.08.02 변경
보통주식	15,612,561 주	금 7,806,280,500 원	2005.08.03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16,062,947 주		2005.09.12 변경

발급확인번호 9040-ANJW-OMHV

00000230441039122010510103254321C5B9C1F6C8C619730127 6 발행일: 2005/12/13

- 1/24 -



PATENT

REEL: 017498 FRAME: 0363

등기번호	002904
------	--------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자본의 총액	변경연월일 등기연월일
보통주식	16,062,947 주	금 8,031,473,500 원	2005.09.14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37,061,721 주		2005.10.11 변경
보통주식	37,061,721 주	금 18,530,860,500 원	2005.10.12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38,412,884 주		2005.11.14 변경
보통주식	38,412,884 주	금 19,206,442,000 원	2005.11.17 등기

목 적

1. 의료기기, 산업기기, 전기기기, 전자기기 및 부분품의 제조·도매, 판매업
 <2005.09.09 삭제 2005.09.15 등기>
2. 수출입업
 <2005.09.09 삭제 2005.09.15 등기>
3. 부동산임대업
 <2005.09.09 삭제 2005.09.15 등기>
4. ~~각항에 부대되는 일체의 사업~~
 <2005.09.09 삭제 2005.09.15 등기>
1. 유용한 유전자 개발 및 판매
 <2005.09.09 변경 2005.09.15 등기>
2. 형질전환 동식물 개발 및 판매
 <2005.09.09 변경 2005.09.15 등기>
3. 신약 개발 및 판매
 <2005.09.09 변경 2005.09.15 등기>
4. 생명공학 관련 시약 또는 시료 및 관련기술 연구개발 및 판매
 <2005.09.09 변경 2005.09.15 등기>
5. 생명공학 관련 연구, 분석 대행
 <2005.09.09 변경 2005.09.15 등기>
6. 생명공학 관련 기술 연수 및 교육
 <2005.09.09 변경 2005.09.15 등기>
7. 생명공학 관련 장비 개발, 대여 및 판매
 <2005.09.09 변경 2005.09.15 등기>
8. 생명공학 관련 기술, 장비 등 대여 및 판매
 <2005.09.09 변경 2005.09.15 등기>
9. 의료기기(전자혈압계, 저주파자극기, 혈당계 등) 제조 및 판매
 <2005.09.09 변경 2005.09.15 등기>
10. 산업기기, 전기기기, 전자기기, 제조 및 판매
 <2005.09.09 변경 2005.09.15 등기>
11. 부분품의 제조 및 판매
 <2005.09.09 변경 2005.09.15 등기>
12. 수출입업
 <2005.09.09 변경 2005.09.15 등기>
13. 부동산임대업
 <2005.09.09 변경 2005.09.15 등기>
14. 위 각항에 부대되는 일체의 사업
 <2005.09.09 변경 2005.09.15 등기>

임원에 관한 사항

이사 최태영 461220-1*****

2000 년 03 월 23 일 중임 2000 년 03 월 28 일 등기
 2003 년 03 월 28 일 중임 2003 년 04 월 10 일 등기

이사 이상복 490502-1*****

2000 년 03 월 23 일 중임 2000 년 03 월 28 일 등기
 2003 년 03 월 28 일 퇴임 2003 년 04 월 10 일 등기

대표이사 최태영 461220-1*****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85 삼풍아파트 2동 1002호

1997 년 02 월 05 일 중임 1997 년 02 월 12 일 등기
 2000 년 03 월 23 일 중임 2000 년 03 월 28 일 등기

대표이사 최태영 461220-1***** 외왕사 포일동 441-2 원덕원삼호아파트 4동 202호

2000 년 11 월 09 일 주소변경 2001 년 03 월 27 일 등기
 2003 년 03 월 28 일 중임 2003 년 04 월 10 일 등기

발급확인번호 9040-ANJW-OMHV

00000230441039122010510103254321C5B9C1F6C8C619730127 6 발행일:2005/12/13

- 2/24 -



PATENT

REC-017198 FRAME 0364

등기번호	002904
2005 년 09 월 09 일 사임	2005 년 09 월 14 일 등기
이사 김원기 510815-1*****	
1999 년 02 월 24 일 취임	1999 년 02 월 26 일 등기
2002 년 03 월 29 일 중임	2002 년 04 월 11 일 등기
2005 년 03 월 29 일 중임	2005 년 04 월 01 일 등기
2005 년 09 월 09 일 사임	2005 년 09 월 14 일 등기
이사 김기영 500208-1*****	
1999 년 02 월 24 일 취임	1999 년 02 월 26 일 등기
2002 년 03 월 29 일 중임	2002 년 04 월 11 일 등기
2005 년 03 월 25 일 사임	2005 년 04 월 01 일 등기
감사 변춘식 490101-1*****	
2000 년 01 월 28 일 취임	2000 년 02 월 10 일 등기
2003 년 03 월 28 일 중임	2003 년 04 월 10 일 등기
2005 년 09 월 09 일 사임	2005 년 09 월 14 일 등기
대표이사 김원기 510815-1***** 서울시 서대문구 창천동 263	
2000 년 03 월 23 일 취임	2000 년 03 월 28 일 등기
2002 년 03 월 29 일 중임	2002 년 04 월 11 일 등기
대표이사 김원기 510815-1*****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739 연희대우아파트 103-901	
2002 년 12 월 05 일 주소변경	2003 년 03 월 11 일 등기
대표이사 김원기 510815-1***** 서울시 서대문구 창천동 263	
2003 년 06 월 18 일 주소변경	2003 년 06 월 27 일 등기
2005 년 03 월 29 일 중임	2005 년 04 월 01 일 등기
2005 년 09 월 09 일 사임	2005 년 09 월 14 일 등기
이사 이사철 610608-1*****	
2005 년 03 월 25 일 취임	2005 년 04 월 01 일 등기
2005 년 09 월 09 일 사임	2005 년 09 월 14 일 등기
이사 김제섭 630131-1*****	
2005 년 09 월 09 일 취임	2005 년 09 월 14 일 등기
이사 정중경 630225-1*****	
2005 년 09 월 09 일 취임	2005 년 09 월 14 일 등기
이사 김중철 570210-1*****	
2005 년 09 월 09 일 취임	2005 년 09 월 14 일 등기
감사 성권영 510410-1*****	
2005 년 09 월 09 일 취임	2005 년 09 월 14 일 등기
대표이사 김제섭 630131-1***** 대전 유성구 도룡동 372-6	
2005 년 09 월 09 일 취임	2005 년 09 월 14 일 등기

기 타 사 항

1. ~~명외개사대리인의 성명, 주소~~~~중귀예탁원~~~~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3~~

1999 년 02 월 24 일 설치

1999 년 02 월 26 일 등기

발급확인번호 9040-ANJW-OMIV

00000230441039122010510103254321C5B9C1F6C8C619730127 6 발행일: 2005/12/13

- 3/24 -



PATENT

REEL: 017198 FRAME: 0366

등기번호	002904
------	--------

증거에 따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6~~

2002 년 09 월 11 일 변경 2002 년 10 월 02 일 등기

1. 병의개서대리인의 상호 및 본점소재지

증권예탁결제원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6

2005 년 01 월 29 일 명의개서대리인의 명칭변경 2005 년 02 월 03 일 등록

1.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

설립동기일로부터 만 30년

지점에 관한 사항

~~안양시 판안구 안양7동 196 유천팩토피아 505 506~~

1994 년 02 월 14 일 결정 1994 년 03 월 02 일 통지

안양시 만안구 안양7동 196 유천팩토피아 504,505,506호

2005 년 09 월 09 일 변경 2005 년 09 월 14 일 동기

경기도 안양시 반안구 안양동 196 유천팩토피아 322호, 406호, 601호, 602호

2005년 11월 07일 설치 2005년 11월 17일 등기

전 환 사 채

1. 시체의 명칭: 세인전지 주식회사 제1회 무보증공모전시체

2. 시책의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권환시책

3. 사채의 권면총액: 금 오십억 원

4. 사채의 발행가액 : 각 사채 권면금액의 100%

5. 각 사채권의 금액: 10만원권 단일권종

6. 시세의 발행방법 : 공시세 등록법령에 의거 등록발행한다.

7. 사채의 이율: 사채발행일로부터 2004년 2월 23일까지 연이율 2%로 책

~~(단 만기시까지 미결제사채에 대해서는 연복리 8.0%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8. 원금상환방법과 기한 : 본 사채의 원금은 2004년 2월 23일에 원금의 110.54%를 일시에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 휴업일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로 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9. 이자지급방법과 기한 : 본 시채의 이자는 발행일 익일로부터 원금상환
기일까지의 이지를 계산하며 아래 이자지급일에 각각 해당기간의 이지를
후급한다. 2001년 12월 31일, 2002년 12월 31일, 2003년 12월 31일, 2004년
2월 23일

~~10. 지급의 사용 목적 : 운영자금~~

11. 시·체모집의 수탁기관 : 해양증권 주식회사

12. 주간사회사 : 하이온주식주식회사

13. ~~사채원리금 지급장소 : 중소기업은행 과천지점 및 해당지역 각 광역시의
도청 소재지 문점~~

14. 사채의 등록기관 : 증권예탁원

~~15. 사 책 의 형 약 일 : 2001년 2월 19일 20일~~

발급 확인 번호: 9140-ANJW-OMHV

00000230441039122010510103254321C5B9C1F6C8C619730127 6 발행인:2005/12/13

- 4/24 -

PATENT

REEL: 017198 FRAME: 0366

등기번호	002904
------	--------

16. 사채의 납입일 : 2001년 2월 23일

17. 사채의 발행일 : 2001년 2월 23일

18. 전환에 관한 사항 : 본사채는 사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사채권면금액의 전액을 다음 각호의 조건에 따라 새안전자(주)의 지명식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1) 전환의 조건

가. 전환비율 : 각 사채권면금액 ('2' 이상의 사채권으로 전환청구시에는 그 권면금액의 합산금액)을 전환가격으로 나눈 주식수의 100%를 전환 주식수로 하고 1주미반의 단수주는 그 단수주에 상당하는 금액을 전환 주권의 교부시 증권에탁원 증권대행부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며, 단수주 대금의 해당까만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사채권면 금액의 일부에 대한 전환은 청구할 수 없다.)

나. 전환가격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소급하여 코스닥 증권시장에서 성립된 보통주의 구주의 종가 (기세는 제외)를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한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종가중 높은 가격을 기준으로한 보통주 기준주가 4,230원54 100%에 해당하는 4,230원을 전환가격으로 하되 청약 3거래일전의 종가중 높은 경우 청약 3거래일전 종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동가격에 100%에 해당하는 가격을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그 전환 가격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로 한다.

다. 전환가격의 조정

- 1) 본 사채발행 3개월 경과일 (2001. 5. 23) 6개월 경과일 (2001. 8. 23) 9개월 경과일 (2001. 11. 23) 12개월 경과일 (2002. 2. 23) 및 18개월 경과일 (2002. 8. 23)을 기준으로 1개월 거래량 가중 평균가격, 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가격,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종가중 높은 가격이 직전 전환가격 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격은 전환가격으로 조정함. 단, 조정후 전환가격은 본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의 45% 이상이어야 한다.
- 2) 전환청구전에 당초의 시가를 허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를 하거나, 기타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 조정후 전환가격

$$\text{조정전 전환가격} \times \frac{\text{기발행주식수} + \text{신발행주식수} \times (1\text{주당발행가격} / \text{시가})}{\text{기발행주식수} + \text{신발행주식수}}$$

- 3)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사회사와 협의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 4) 단 2)항의 산식에 의한 기발행주식수는 조정후 전환가격의 적용일 직전 원발행 현재의 주식수로 하며, 조정후 전환가격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 5) 상기 조정기준 사유로 인하여 계산된 전환 가격이 액면가에 미달할 경우 조정 전환 가격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2) 전환에 따른 발행할 주식의 종류 : 새안전자주식회사 지명식 보통주

발급확인번호 9)40-ANJW-OMIV

00000230441039122010510103254321C5B9C1F6C8C619730127 6 발행일:2005/12/13

- 5/24 -



PATENT

REEL: 017198 FRAME: 0367

등기번호

002904

- 3) 전환청구기간 사채발행일 3개월 이후 (2001년 5월 24일)부터 상환기일 1개월 전 일 (2004년 1월 23일)까지로 한다.
- 4) 전환청구를 접수할 장소: 증권에탁원 증권대행부
- 5) 전환으로 발행될 주식의 최초 배당금 및 이자: 전환으로 발행된 주식은 전환청구일이 속한 영업년도의 직전영업년도말에 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배당의 효력을 가지며, 전환청구일이 속하는 영업년도에 대한 이자는 소멸한다
- 6) 기타사항
- 가. 전환청구 절차: 소정의 전환청구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날인하여 사채권을 첨부하여 증권에탁원 증권대행부에 청구한다.
- 나. 전환의 효력발생 시기: 전환은 증권에탁원 증권대행부에 전환청구서를 제출한 때에 발생한다.
- 다. 유.무상증자의 제한: 전환권 행사 이전에 유.무상증자를 실시함으로써 조정후 전환가격이 매면가액 미만인 될 경우에는 유.무상증자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 라. 전환사채 발행의 제한: 전환권 행사 이전에 추가로 전환사채를 발행할시는 전환가격이 본 전환사채의 전환가격보다 높아야 한다.
- 마. 미발행주식의 보유: 사채권 소유자가 주식으로 전환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까지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에 전환된 주식 (미발행주식수)를 보유한다.
- 바. 전환청구에 의한 증자등가는 전환청구일이 속하는 말일로부터 2주간내에 한다.
- 사. 전환주식의 교부방법: 전환청구로 발행되는 주식은 전환청구가 있는 원단 익월 20일부터 증권에탁원 증권대행부에서 교부한다.
- 아. 전환가격 조정사.공시방법: 전환가격이 조정될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 증권업협회, 주간사회사에 통보하며, 공표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10. 기타사항: 전 각호 사항 외에 사채발행을 위한 총액인수 계약 체결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계 기관과의 협의 또는 조정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사항은 대표이사가 주간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2001년 02월 26일 등기 >

1. 사채의 명칭: 세인전자 주식회사 제1회 무보증공모전환사채
2. 사채의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전환사채
3. 사채의 권면총액: 금 4,986,300,000원
4. 사채의 발행가액: 각 사채 권면금액의 100%
5. 각 사채권의 금액: 10만원권 단일권종
6. 사채의 발행방법: 공사채 등록법령에 의거 등록발행한다.
7. 사채의 이율: 사채발행일로부터 2004년 2월 23일까지 연이율 2%로 함
(단, 만기시까지 미전환사채에 대해서는 연복리 8.0%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8. 원금상환방법과 기한: 본 사채의 원금은 2004년 2월 23일에 원금의 119.54%를 일시에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9. 이자지급방법과 기한: 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 익일로부터 원금상환 기일까지의 이자를 계산하며 아래 이자지급일에 각각 해당기간의 이자를 지급한다. 2001년 12월 31일, 2002년 12월 31일, 2003년 12월 31일, 2004년

발급확인번호 9)40-ANJW-OMHV

00000230441039122010510103254321C5B9C1F6C8C619730127 6 발행일:2005/12/13

- 6/24 -

PATENT

REEL: 017198 FRAME: 0368

등기번호

002904

2월 23일,

10. 자금의 사용목적 : 운영자금
 11. 사채모집의 수탁기관 : 한양증권 주식회사
 12. 주관사회사 : 한양증권 주식회사
 13. 사채원리금 지급장소 : 증소기업은행 과천지점 및 해당지역 각 광역사와
 도청 소재지 모점
 14. 사채의 등록기관 : 증권예탁원
 15. 사채의 청약일 : 2001년 2월 19일 20일
 16. 사채의 납입일 : 2001년 2월 23일
 17. 사채의 발행일 : 2001년 2월 23일
 18. 전환에 관한 사항 : 본사채는 사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사채권면금액의
 전액을 다음 각호의 조건에 따라 세인전자(주)의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1) 전환의 조건

가. 전환비율 : 각 사채권면금액 (121 이상의 사채권으로 전환청구시에는
 그 권면금액의 합산금액)을 전환가격으로 나눈 주식수의 100%를 전환
 주식수로 하고 1주미만의 단수주는 그 단수주에 상당하는 금액을 전환
 주권의 교부사 증권예탁원 증권대행부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며, 단수주
 대금의 해당기간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사채권면 금액의
 일부에 대한 전환은 청구할 수 없다.)

나. 전환가격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의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소급하여 코스닥
 증권시장에서 성립된 보통주의 구주와 종가 (기세는 제외)를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한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종가중 높은 가격을 기준으로한 보통주 기준주가 4,230원의
 100%에 해당하는 4,230원을 전환가격으로 하되 청약 3거래일전의 종가
 높을 경우 청약 3거래일전 종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동가격에 100%에 해당하는
 가격을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그 전환 가격이 액면가액보다 낮을 경우에는
 액면가로 한다.

다. 전환가격의 조정

- 1) 본 사채발행 3개월 경과일 (2001. 5. 23) 6개월 경과일 (2001. 8. 23) 9개월
 경과일 (2001. 11. 23) 12개월 경과일 (2002. 2. 23) 및 18개월 경과일 (2002.
 8. 23)을 기준으로 1개월 거래량 가중 평균가격, 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가격,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종가중 높은 가격이 직전 전환가격
 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격을 전환가격으로 조정함. 단, 조정후 전환가격은
 본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의 45% 이상이어야 한다.
 2) 전환청구전에 당초의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를 하거나, 기타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 조정후 전환가격

$$\text{조정전 전환가격} \times \frac{\text{기발행주식수} + \text{신발행주식수} \times (1\text{주당발행가격} / \text{시가})}{\text{기발행주식수} + \text{신발행주식수}}$$

발급확인번호 9040-ANJW-OMHV

00000230441039122010510103254321C5B9C1F6C8C619730127 6 발행일: 2005/12/13

- 7/24 -

PATENT

REEL: 017498 FRAME: 0369

등기번호

002904

3)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권사회사의 협의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4) 단 2)항의 산식에 의한 기발행주식수는 조정후 전환가액의 적용일 직전원말 현재의 주식수로 하며, 조정후 전환가격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5) 상기 조정기준 사유로 인하여 계산된 전환 가액이 액면가에 미달할 경우 조정 전환 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2) 전환에 따른 발행할 주식의 종류 : 새인전자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

3) 전환청구기간 : 사채발행일 3개월 이후 (2001년 5월 24일)부터 상환기일 1개월전일 (2004년 1월 23일)까지로 한다.

4) 전환청구를 접수할 장소 : 증권에탁원 증권대행부

5) 전환으로 발행될 주식의 최초 배당금 및 이자 : 전환으로 발행된 주식은 전환상구일이 속한 영업년도와 직전영업년도말에 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배당의 효력을 가지며, 전환청구일이 속하는 영업년도에 대한 이자는 소멸한다.

6) 기타사항

가. 전환청구 절차 : 소정의 전환청구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후 사채권을 첨부하여 증권에탁원 증권대행부에 청구한다.

나. 전환의 효력발생 시기 : 전환은 증권에탁원 증권대행부에 전환청구서를 제출한 때에 발생한다.

다. 유.무상증자의 제한 : 전환권 행사 이전에 유.무상증자를 실시함으로써 조정후 전환가격이 액면가액 미만이 될 경우에는 유.무상증자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라. 전환사채 발행의 제한 : 전환권 행사 이전에 추가로 전환사채를 발행할 시는 전환가격이 본 전환사채의 전환 가격보다 높아야 한다.

마. 미발행주식의 보유 : 사채권 소유자가 주식으로 전환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까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총수에 전환될 주식 (미발행주식수)를 보유한다.

바. 전환청구에 의한 증자등기는 전환청구일이 속하는 말일로부터 2주간내에 한다.

사. 전환주권의 교부방법 : 전환청구로 발행되는 주식은 전환청구가 있는 원의 익월 20일부터 증권에탁원 증권대행부에서 교부한다.

아. 전환가격 조정시 공시방법 : 전환가격이 조정될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 증권업협회, 주권사회사에 통보하며, 공고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19. 기타사항 : 전 각호 사항 외에 사채발행을 위한 총액인수 계약 체결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계 기관과의 협의 또는 조정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사항은 대표이사과 주권사의 협의하여 결정한다.

< 2001년 05월 25일 변경 2001년 06월 04일 등기 >

1. 사채의 명칭 : 새인전자 주식회사 제1회 무보증공모전환사채

2. 사채의 종류 : 무기명식 아권부 무보증전환사채

3. 사채의 권면총액 : 금 4,951,500,000원

4. 사채의 발행가액 : 각 사채 권면금액의 100 %

5. 각 사채권의 금액 : 10만원권 단일권종

6. 사채의 발행방법 : 공사채 등록법령에 의거 등록발행한다.

7. 사채의 이율 : 사채발행일로부터 2004년 2월 23일까지 연이율 2%로 함

만급확인번호 9)40-ANJW-OMHV

00000230441039122010510103254321C5B9C1F6C8C619730127 6 발행일:2005/12/13

- 8/24 -

PATENT

REEL: 017198 FRAME: 0370

등기번호

002904

(단, 만기사까지 미전환사채에 대해서는 연복리 8.0%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8. 원금상환방법과 기한 : 본 사채의 원금은 2004년 2월 23일에 원금의 119.54%를 일시에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9. 이자지급방법과 기한 : 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 익일로부터 원금상환 기일까지의 이자를 계산하며 아래 이자지급일에 각각 해당기간의 이자를 지급한다. 2001년 12월 31일, 2002년 12월 31일, 2003년 12월 31일, 2004년 2월 23일.
10. 자금의 사용목적 : 운영자금
11. 사채모집의 수탁기관 : 한양증권 주식회사
12. 주관사회사 : 한양증권 주식회사
13. 사채원리금 지급장소 : 중소기업은행 과천지점 및 해당지역 각 광역시와 도청 소재지 모점
14. 사채의 등록기관 : 증권예탁원
15. 사채의 정약일 : 2001년 2월 19일 20일
16. 사채의 납입일 : 2001년 2월 23일
17. 사채의 발행일 : 2001년 2월 23일
18. 전환에 관한 사항 : 본사채는 사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사채권면금액의 잔액을 다음 각호의 조건에 따라 새인전자(주)의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1) 전환의 조건

가. 전환비용 : 각 사채권면금액 ('2' 이상의 사채권으로 전환청구시에는 그 권면금액의 합산금액)을 전환가격으로 나눈 주식수와 100%를 전환 주식수로 하고 1주미만의 단수주는 그 단수주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환 주권과 교부시 증권예탁원 증권대행부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며, 단수주 배금의 해당기간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사채권면 금액의 일부에 대한 전환은 청구할 수 없다.)

나. 전환가격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소급하여 코스닥 증권시장에서 성립된 보통주의 구주의 종가 (가세는 제외)를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한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종가중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한 보통주 기준주가 4,230원의 100%에 해당하는 4,230원을 전환가격으로 하되 청약 3거래일선의 종가가 높은 경우 청약 3거래일선 종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동가격에 100%에 해당하는 가격을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그 전환 가격이 액면가액보다 낮을 경우에는 액면가로 한다.

다. 전환가격의 조정

- 1) 본 사채발행 3개월 경과일 (2001. 5. 23) 6개월 경과일 (2001. 8. 23) 9개월 경과일 (2001. 11. 23) 12개월 경과일 (2002. 2. 23) 및 18개월 경과일 (2002. 8. 23)을 기준으로 1개월 거래량 가중 평균가격, 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가격,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종가중 높은 가격이 직전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격을 전환가격으로 조정함. 단, 조정후 전환가격은

발급확인번호 9)40-ANJW-OMHV

00000230441039122010510103254321C5B9C1F6C8C619730127 6 발행일: 2005/12/13

- 9/24 -

PATENT

REEL: 017198 FRAME: 0371

등기번호

002904

본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의 45% 이상이어야 한다.

- 2) 전환청구전에 당초의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를 하거나, 기타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 조정후 전환가격

$$\frac{\text{기발행주식수} + \text{신발행주식수} \times (\text{1주당발행가격} / \text{시가})}{\text{기발행주식수} + \text{신발행주식수}}$$

조정전 전환가격x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3)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합의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 4) 단 2)항의 산식에 의한 기발행주식수는 조정후 전환가격의 적용일 직전인판 현재의 주식수로 하며, 조정후 전환가격의 원단위 미단은 절사한다.

- 5) 상기 조정기준 사유로 인하여 계산된 전환 가격액이 액면가에 미달할 경우 조정 전환 가격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 2) 전환에 따른 발행할 주식의 종류 : 세인전자주식회사 지명식 보통주

- 3) 전환청구기간 사채발행일 3개월 이후 (2001년 5월 24일)부터 상환기일 1개월전일 (2004년 1월 23일)까지로 한다.

- 4) 전환청구접수할 장소 : 증권에탁원 증권대행부

- 5) 전환으로 발행될 주식의 최초 배당금 및 이자 : 전환으로 발행된 주식은 전환청구일이 속한 영업년도의 작전영업년도말에 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배당의 효력을 가지며, 전환청구일이 속하는 영업년도에 대한 이자는 소멸한다

- 6) 기타사항

가. 전환청구 절차 : 소정의 전환청구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자임날인하여 사채권을 첨부하여 증권에탁원 증권대행부에 청구한다.

나. 전환의 효력발생 시기 : 전환은 증권에탁원 증권대행부에 전환청구서를 제출한 때에 발생한다.

다. 유.무상증자의 제한 : 전환권 행사 이전에 유.무상증자를 실시함으로써 조정후 전환가격이 액면가액 미만일 경우에는 유.무상증자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라. 전환사채 발행의 제한 : 전환권 행사 이전에 추가로 전환사채를 발행할시는 전환 가격에 본 전환사채의 전환 가격보다 높아야 한다.

마. 미발행주식의 보유 : 사채권 소유자가 주식으로 전환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까지 회사에 발행할 주식의 총수에 전환될 주식 (미발행주식수)를 보유한다.

바. 전환청구에 의한 증자등기는 전환청구일이 속하는 말일로부터 2주간내에 한다.

사. 전환주권의 교부방법 : 전환청구로 발행되는 주식은 전환청구가 있는 월의 익월 20일부터 증권에탁원 증권대행부에서 교부한다.

아. 전환가격 조정시 공시방법 : 전환가격이 조정될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 증권업 협회, 주주총회에 통보하며, 공고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10. 기타사항 : 전 각호 사항 외에 사채발행을 위한 종액인수 제한, 체결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또는 조정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사항은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의 합의하여 결정한다

발급확인번호 9)40-ANJW-OMHV

00000230411039122010510103254321C5B9C1F6C8C619730127 6 발행일: 2005/12/13

- 10/24 -

PATENT

REEL: 017198 FRAME: 0372

등기번호

002904

< 2001년 05월 28일 변경 2001년 06월 04일 등기 >

1. 사채의 명칭 : 세인전자 주식회사 제1회 무보증공모전환사채
 2. 사채의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전환사채
 3. 사채의 권면총액 : 금 4,944,900,000원
 4. 사채의 발행가액 : 각 사채 권면금액의 100%
 5. 각 사채권의 금액 : 10만원권 단일권종
 6. 사채의 발행방법 : 공시채 등록법령에 의거 등록발행한다.
 7. 사채의 이율 : 사채발행일로부터 2004년 2월 23일까지 연이율 2%로 함
(단, 만기시까지 미전환사채에 대해서는 연복리 8.0%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8. 원금상환방법과 기한 : 본 사채의 원금은 2004년 2월 23일에 원금의
119.54%를 일시에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9. 이자지급방법과 기한 : 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 익일로부터 원금상환
기일까지의 이자를 계산하며 아래 이자지급일에 각각 해당기간의 이자를
후급한다. 2001년 12월 31일, 2002년 12월 31일, 2003년 12월 31일, 2004년
2월 23일,
 10. 자금의 사용목적 : 운영자금
 11. 사채모집의 수탁기관 : 한양증권 주식회사
 12. 주관사회사 : 한양증권 주식회사
 13. 사채원리금 지급장소 : 중소기업은행 과천지점 및 해당지역 각 광역시의
도청 소재지 모점
 14. 사채의 등록기관 : 증권예탁원
 15. 사채의 청약일 : 2001년 2월 19일 ~ 20일
 16. 사채의 납입일 : 2001년 2월 23일
 17. 사채의 발행일 : 2001년 2월 23일
 18. 전환에 관한 사항 : 본사채는 사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사채권면금액의
전액을 다음 각호의 조건에 따라 세인전자(주)의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 1) 전환의 조건
 - 가. 전환비율 : 각 사채권면금액 ('2' 이상의 사채권으로 전환청구시에는
그 권면금액의 합산금액)을 전환가격으로 나눈 주식수의 100%를 전환
주식수로 하고 1주미만의 단수주는 그 단수주에 상당하는 금액은 전환
주권의 교부시 증권예탁원 증권대행부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며, 단수주
대금의 해당기간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사채권면 금액의
일부에 대한 전환은 청구할 수 없다.)
 - 나. 전환가격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소급하여 코스닥
증권시장에서 성립된 보통주의 구주의 종가 (가세는 제외)를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한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종가중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한 보통주 기준주가 4,230원의
100%에 해당하는 4,230원을 전환가격으로 하되 청약 3거래일전와 종가가
높을 경우 청약 3거래일전 종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동가격에 100%에 해당하는

발급확인번호 9)40-ANJW-OMHV

00000230441039122010510103254321C5B9C1F6C8C619730127 6 발행일:2005/12/13

- 11/24 -

PATENT

REEL: 017198 FRAME: 0373

등기번호

002904

가격을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그 전환 가격이 액면가액보다 낮을 경우에는 액면가로 한다.

다. 전환가격의 조정

1) 본 사채발행 3개월 경과일 (2001. 5. 23) 6개월 경과일 (2001. 8. 23) 9개월 경과일 (2001. 11. 23) 12개월 경과일 (2002. 2. 23) 및 18개월 경과일 (2002. 8. 23)을 기준으로 1개월 거래량 가중 평균가격, 1주일 거래량 가중 평균가격,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종가중 높은 가격이 각각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격을 전환가격으로 조정함. 단, 조정후 전환가격은 본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의 45% 이상이어야 한다.

2) 전환청구전에 당초의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를 하거나, 기타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 조정후 전환가설

$$\text{조정전 전환가격} \times \frac{\text{기발행주식수} + \text{신발행주식수} \times (1\text{주당발행가격} / \text{시가})}{\text{기발행주식수} + \text{신발행주식수}}$$

3)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간사회사의 협의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4) 단 2)항의 산식에 의한 기발행주식수는 조정후 전환가격의 적용일 직전원말 현재와 주식수로 하며, 조정후 전환가격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5) 상기 조정기준 사유로 인하여 계산된 전환 가액이 액면가에 미달할 경우 조정 전환 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2) 전환에 따른 발행할 주식의 종류 : 새인전자주식회사 지명식 보통주

3) 전환청구기간 사채발행일 3개월 이후 (2001년 5월 24일)부터 상환기일 1개월전일 (2004년 1월 23일)까지로 한다.

4) 전환청구를 접수할 장소 : 증권에탁원 증권대행부

5) 전환으로 발행될 주식의 최초 배당금 및 이자 : 전환으로 발행된 주식은 전환청구일이 속한 영업년도의 직전영업년도말에 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배당의 효력을 가지며, 전환청구일이 속하는 영업년도에 대한 이자는 소멸한다.

6) 기타사항

가. 전환청구 절차 : 소정의 전환청구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날인하여 4 채권을 첨부하여 증권에탁원 증권대행부에 청구한다.

나. 전환의 효력발생 시기 : 전환은 증권에탁원 증권대행부에 전환청구서를 제출한 때에 발생한다.

다. 유.무상증자의 제한 : 전환권 행사 이전에 유.무상증자를 실시함으로써 조정후 전환가격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유.무상증자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라. 전환사채 발행의 제한 : 전환권 행사 이전에 추가로 전환사채를 발행할 때는 전환가격이 본 전환사채의 전환 가격보다 높아야 한다.

마. 다발행주식의 보유 : 사채권 소유자가 주식으로 전환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까지 회사에 발행할 주식의 총수에 전환될 주식 (다발행주식수)를 보유한다.

바. 전환청구에 의한 증자등기는 전환청구일이 속하는 말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한다.

발급확인번호 9040-ANJW-OMHV

00000230441039122010510103254321C5B9C1F6C8C619730127 6 발행일:2005/12/13

- 12/24 -



PATENT

REEL: 017198 FRAME: 0374

등기번호

002904

사. 전환주권의 교부방법 : 전환청구로 발행되는 주식은 전환청구가 있는 일의 익일 20일부터 증권예탁원 증권대행부에서 교부한다.

이. 전환가격 조정시 공시방법 : 전환가격이 조정될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 증권업협회, 주관사회사에 통보하며, 공고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19. 기타사항: 전 각호 사항 외에 사채발행을 위한 총액인수 계약 체결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계 기관과의 협의 또는 조정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사항은 대표이사나 주관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2001년 05월 29일 변경 2001년 06월 04일 동기 >

1. 사채의 명칭: 세인전자 주식회사 제1회 무보증공모전환사채

2. 사채의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전환사채

3. 사채의 권면총액: 금 4,776,000,000원

4. 사채의 발행가격: 각 사채 권면금액의 100%

5. 각 사채권의 금액: 10만원권 단일권종

6. 사채의 발행방법: 공시채 등록법령에 의거 등록발행한다.

7. 사채의 이율: 사채발행일로부터 2004년 2월 23일까지 연이율 2%로 함
(단, 만기일까지 미전환사채에 대해서는 연복리 8.0%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8. 원금상환방법과 기한: 본 사채의 원금은 2004년 2월 23일에 원금의 119.54%를 원시에상환한다. (단, 상환지일이 은행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고 원금 상환지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9. 이자지급방법과 기한: 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 익일로부터 원금상환 기일까지의 이자를 계산하며 아래 이자지급일에 각각 해당기간의 이자를 후급한다. 2001년 12월 31일, 2002년 12월 31일, 2003년 12월 31일, 2004년 2월 23일.

10. 자금의 사용목적: 운영자금

11. 사채모집의 수탁기관: 한양증권 주식회사

12. 주관사회사: 한양증권 주식회사

13. 사채원리금 지급장소: 중소기업은행 피관지점 및 해당지역 각 광역시와 도청 소재지 모점

14. 사채의 등록기관: 증권예탁원

15. 사채의 청약일: 2001년 2월 19일 ~ 20일

16. 사채의 납입일: 2001년 2월 23일

17. 사채의 발행일: 2001년 2월 23일

18. 전환에 관한 사항: 본사채는 사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사채권면금액의 전액을 다음 각호의 조건에 따라 세인전자(주)의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1) 전환의 조건

가. 전환비율: 각 사채권면금액 (121 이상의 사채권으로 전환청구시에는 그 권면금액의 합산금액)은 전환가격으로 나눈 주식수와 100%를 전환 주식수로 하고 1주미만의 단수주는 그 단수주에 상당하는 금액을 전환 주권의 교부시 증권예탁원 증권대행부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며, 단수주

발급확인번호 9)40-ANJW-OMIV

00000230441039122010510103254321C5B9C1F6C8C619730127 6 발행일: 2005/12/13

- 13/24 -

PATENT

REEL: 017198 FRAME: 0375

등기번호

002904

대금의 해당기간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사채권면 금액의 일부에 대한 전환은 청구할 수 없다.)

나. 전환가격: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소급하여 코스닥-증권시장에서 성립된 보통주의 구주의 종가 (가세는 제외)를 거래당으로 가중평균한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종가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한 보통주 기준주가 4,230원의 100%에 해당하는 4,230원을 전환가격으로 하되 청약 3거래일 전의 종가과 높은 경우 청약 3거래일 전 종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동가격에 100%에 해당하는 가격을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그 전환 가격이 액면가액보다 낮을 경우에는 액면가로 한다.

다. 전환가격의 조정

1) 본 사채발행 3개월 경과일 (2001. 5. 23) 6개월 경과일 (2001. 8. 23) 9개월 경과일 (2001. 11. 28) 12개월 경과일 (2002. 2. 23) 및 18개월 경과일 (2002. 8. 23)을 기준으로 1개월 거래량 가중 평균가격, 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가격,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종가중 높은 금액이 직전 전환가격 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격을 전환가격으로 조정함. 단, 조정후 전환가격은 본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의 45% 이상이어야 한다.

2) 전환청구전에 당초의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를 하거나, 기타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 조정후 전환가격

$$\text{조정전 전환가격} \times \frac{\text{기발행주식수} + \text{신발행주식수} \times (1\text{주당발행가격} / \text{시가})}{\text{기발행주식수} + \text{신발행주식수}}$$

3)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권사회사와 협의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4) 단 2)항의 산식에 의한 기발행주식수는 조정후 전환가격의 적용일 직전원단 현재의 주식수로 하며, 조정후 전환가격의 원단위 마반은 철사한다.

5) 상기 조정기준 사유로 인하여 계산된 전환 가격이 액면가에 미달할 경우 조정 전환 가격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2) 전환에 따른 발행할 주식의 종류: 새인전지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

3) 전환청구기간: 사채발행일 3개월 이후 (2001년 5월 24일)부터 상환기일 1개월전일 (2004년 1월 23일)까지로 한다.

4) 전환청구를 접수할 장소: 증권에탁원 증권대행부

5) 전환으로 발행될 주식의 최초 배당금 및 이자: 전환으로 발행된 주식은 전환청구일이 속한 영업년도의 직전영업년도말에 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배당의 효력을 가지며, 전환청구일이 속하는 영업년도에 대한 이자는 소멸한다

6) 기타사항

가. 전환청구 절차: 소정의 전환청구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날인하여 사채권을 첨부하여 증권에탁원 증권대행부에 청구한다.

나. 전환의 효력발생 시기: 전환은 증권에탁원 증권대행부에 전환청구서를 제출한

발급확인번호 9)40-ANJW-OMHV

00000230441039122010510103254321C5B9C1F6C8C619730127 6 발행일:2005/12/13

14/24 -

PATENT

REEL: 017198 FRAME: 0376

등기번호

002904

때에 발생한다.

다. 유, 무상증자의 제한: 전환권 행사 이전에 유, 무상증자를 실시함으로써 그 결과 전환가격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에는 유, 무상증자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라. 전환사채 발행의 제한: 전환권 행사 이전에 추가로 전환사채를 발행할 때는 전환가격이 본 전환사채의 전환가격보다 높아야 한다.

마. 미발행주식의 보유: 사채권 소유자가 주식으로 전환청구할 수 있는 기간까지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에 전환될 주식(미발행주식수)을 보유한다.

바. 전환청구에 의한 증자등기는 전환청구일이 속하는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한다.

사. 전환주권의 교부방법: 전환청구로 발행되는 주식은 전환청구가 있는 월의 익월 20일부터 증권예탁원 증권대행부에서 교부한다.

아. 전환가격 조정시 공시방법: 전환가격이 조정될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 증권업협회, 주권사회사에 통보하며, 공고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19. 기타사항: 전 각항 사항 외에 사채발행을 위한 총액인수 계약 체결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계 기관과의 협의 또는 조정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사항은 대표이사과 주권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2001년 06월 14일 변경 2001년 06월 18일 등기 >

1. 사채의 명칭: 세인전자 주식회사 제1회 부보증권모전환사채

2. 사채의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부보증권전환사채

3. 사채의 권면총액: 금 4,673,800,000원

4. 사채의 발행가액: 각 사채 권면금액의 100%

5. 각 사채권의 금액: 10만원권 단일권종

6. 사채의 발행방법: 공사채 등록법령에 의거 등록발행한다.

7. 사채의 이율: 사채발행일로부터 2004년 2월 23일까지 연이율 2%로 함
(단, 만기사까지 미전환사채에 대해서는 연복리 8.0%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8. 원금상환방법과 기한: 본 사채의 원금은 2004년 2월 23일에 원금의 119.54%를 일시에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9. 이자지급방법과 기한: 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 익일로부터 원금상환 기일까지의 이자를 계산하며 아래 이자지급일에 각각 해당기간의 이자를 후급한다. 2001년 12월 31일, 2002년 12월 31일, 2003년 12월 31일, 2004년 2월 23일.

10. 자금의 사용목적: 운영자금

11. 사채모집의 수탁기관: 한양증권 주식회사

12. 주권사회사: 한양증권 주식회사

13. 사채원리금 지급장소: 중소기업은행 외환지점 및 해당지역 각 광역사와 도청 소재지 모점

14. 사채의 등록기관: 증권예탁원

15. 사채의 정약일: 2001년 2월 19일-20일

16. 사채의 납입일: 2001년 2월 23일

17. 사채의 발행일: 2001년 2월 23일

발급확인번호 9)40-ANJW-OMHV

00000230441039122010510103254321C5B9C1F6C8C619730127 6 발행일: 2005/12/13

- 15/24 -

PATENT

REEL: 017198 FRAME: 0377

등기번호

002904

18. 전환에 관한 사항 : 본사채는 사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사채권면금액의 전액을 다음 각호의 조건에 따라 세인전자(주)의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1) 전환의 조건

가. 전환비율 : 각 사채권면금액 (·2 이상)의 사채권으로 전환청구시에는 그 권면금액의 합산금액)을 전환가격으로 나는 주식수의 100%를 전환 주식수로 하고 1주미만의 단수주는 그 단수주에 상응하는 금액을 전환 주권의 교부시 증권에탁원 증권대행부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며, 단수주 대금의 해당기간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사채권면 금액의 일부에 대한 전환은 청구할 수 없다.)

나. 전환가격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소급하여 코스닥 증권시장에서 형성된 보통주의 구주의 종가 (기세는 제외)를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한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종가중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한 보통주 기준주가 4,230원의 100%에 해당하는 4,230원을 전환가격으로 하되 청약 3거래일전의 종가가 높을 경우 청약 3거래일전 종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동가격에 100%에 해당하는 가격을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그 전환 가격이 액면가액보다 낮을 경우에는 액면가로 한다.

다. 전환가격의 조정

- 1) 본 사채발행 3개월 경과일 (2001. 5. 23) 6개월 경과일 (2001. 8. 23) 9개월 경과일 (2001. 2. 28) 12개월 경과일 (2002. 2. 23) 및 18개월 경과일 (2002. 8. 23)을 기준으로 1개월 거래량 가중 평균가격, 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가격,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종가중 높은 가격이 직전 전환가격 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격을 전환가격으로 조정함. 단, 조정후 전환가격은 본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의 45% 이상이어야 한다.
- 2) 전환청구전에 당호의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를 하거나, 기타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 조정후 전환가격

$$\text{조정전 전환가격} \times \frac{\text{기발행주식수} + \text{신발행주식수} \times (1\text{주당발행가격} / \text{시가})}{\text{기발행주식수} + \text{신발행주식수}}$$

- 3)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권사회사와 협의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 4) 단 2)항의 산식에 의한 기발행주식수는 조정후 전환가격의 적용일 직전 원발행 주권의 주식수로 하며, 조정후 전환가격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 5) 상기 조정기준 사유로 인하여 계산된 전환 가액이 액면가에 미달할 경우 조정 전환 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2) 전환에 따른 발행할 주식의 종류 : 세인전자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

3) 전환청구기간 사채발행일 3개월 이후 (2001년 5월 24일)부터 상환기일 1개월 전일 (2004년 1월 23일)까지로 한다.

발급확인번호 9)40-ANJW-OMHV

00000230441039122010510103254321C5B9C1F6C8C619730127 6 발행일:2005/12/13

- 16/24 -

PATENT

REEL: 017198 FRAME: 0378

등기번호

002904

- 4) 전환청구를 접수할 장소: 증권에탁원 증권대행부
 5) 전환으로 발행될 주식의 최초 배당금 및 이자: 전환으로 발행된 주식은 전환청구일이 속한 영업년도와 직전영업년도말에 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배당의 효력을 가지며, 전환청구일이 속하는 영업년도에 대한 이자는 소멸한다
 6) 기타사항

가. 전환청구 절차: 소정의 전환청구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날인하여, 사채권을 첨부하여 증권에탁원 증권대행부에 청구한다.

나. 전환의 효력발생 시기: 전환은 증권에탁원 증권대행부에 전환청구서를 제출한 때에 발생한다.

다. 유.무상증자의 제한: 전환권 행사 이전에 유.무상증자를 실시함으로써 조정후 전환가격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유.무상증자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라. 전환사채 발행의 제한: 전환권 행사 이전에 추가로 전환사채를 발행할 때는 전환가격이 본 전환사채의 전환 가격보다 높아야 한다.

마. 미발행주식의 보유: 사채권 소유자가 주식으로 전환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까지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에 전환될 주식(미발행주식수)를 보유한다.

바. 전환청구에 의한 증자등자는 전환청구일이 속하는 말일로부터 2주간내에 한다.

사. 전환주권의 교부방법: 전환청구로 발행되는 주식은 전환청구가 있는 원사 일월 20일부터 증권에탁원 증권대행부에서 교부한다.

아. 전환가격 조정시 공시방법: 전환가격이 조정될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 증권업협회, 주간사회사에 통보하며, 공고는 서울특별사에서 발행하는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19. 기타사항: 전 각항 사항 외에 사채발행을 위한 총액인수 계약 체결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또는 조정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사항은 대표이사과 주간사의 협의하여 결정한다

< 2001년 06월 15일 변경 2001년 06월 18일 동기 >

1. 사채의 명칭: 세인전자 주식회사 제1회 무보증공모전환사채
2. 사채의 종류: 무자명식 이권부 무보증전환사채
3. 사채의 권면총액: 금 4,666,700,000원
4. 사채의 발행가액: 각 사채 권면금액의 100%
5. 각 사채권의 금액: 10만원권 단일권종
6. 사채의 발행방법: 공사채 등록법령에 의거 등록발행한다.
7. 사채의 이율: 사채발행일로부터 2004년 2월 23일까지 연이율 2%로 함
(단, 만기시까지 미전환사채에 대해서는 연복리 8.0%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8. 원금상환방법과 기한: 본 사채의 원금은 2004년 2월 23일에 원금의 119.54%를 일시에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9. 이자지급방법과 기한: 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 익일로부터 원금상환 기일까지의 이자를 계산하며 아래 이자지급일에 각각 해당기간의 이자를 후급한다. 2001년 12월 31일, 2002년 12월 31일, 2003년 12월 31일, 2004년 2월 23일.
10. 자금의 사용목적: 운영자금

발급확인번호 9)40-ANJW-OMHV

00000230441039122010510103254321C5B9C1F6C8C619730127 6 발행일: 2005/12/13

- 17/24 -

PATENT

REEL: 017198 FRAME: 0379

등기번호

002904

11. 사채모집의 수탁기관 : 한양증권 주식회사
 12. 주관회사 : 한양증권 주식회사
 13. 사채원리금 지급장소 : 중소기업은행 과천지점 및 해당지역 각 광역사와
 도청 소재지 보철
 14. 사채의 등록기관 : 증권예탁원
 15. 사채의 청약일 : 2001년 2월 19일 20일
 16. 사채의 납입일 : 2001년 2월 23일
 17. 사채의 발행일 : 2001년 2월 23일
 18. 전환에 관한 사항 : 본사채는 사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사채권면금액의
 전액을 다음 각호의 조건에 따라 세원전자(주)의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1) 전환의 조건

가. 전환비율 : 각 사채권면금액 ('2' 이상의 사채권으로 전환청구시에는
 그 권면금액의 합산금액) 을 전환가격으로 나눈 주식수와 100%를 전환
 주식수로 하고 1주미만의 단수주는 그 단수주에 상당하는 금액을 전환
 주권의 교부시 증권예탁원 증권대행부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며, 단수주
 대금의 해당기간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사채권면 금액의
 일부에 대한 전환은 청구할 수 없다.)

나. 전환가격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소급하여 코스닥-
 증권시장에서 성립된 보통주의 구주의 종가 (지세는 제외) 를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한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종가중 높은 가격을 기준으로한 보통주 기준주가 4,230원(이)
 100%에 해당하는 4,230원을 전환가격으로 하되 청약 3거래일전의 종가자
 높을 경우 청약 3거래일전 종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동가격에 100%에 해당하는
 가격을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그 전환 가격이 액면가액보다 낮을 경우에는
 액면가로 한다.

다. 전환가격의 조정

- 1) 본 사채발행 3개월 경과일 (2001. 5. 23) 6개월 경과일 (2001. 8. 23) 9개월
 경과일 (2001. 11. 23) 12개월 경과일 (2002. 2. 23) 및 18개월 경과일 (2002.
 8. 23) 을 기준으로 1개월 거래량 가중 평균가격, 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가격,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종가중 높은 가격이 직전 전환가격
 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격을 전환가격으로 조정함. 단, 조정후 전환가격은
 본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의 45% 이상이어야 한다.
 2) 전환청구전에 당초의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를 하거나, 기타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 조정후 전환가격

$$\text{조정전 전환가격} \times \frac{\text{기발행주식수} + \text{신발행주식수} \times (1 \text{주당발행가격} / \text{시가})}{\text{기발행주식수} + \text{신발행주식수}}$$

- 3)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급회원번호 9040-ANJW-OMHV

00000230441039122010510103254321C5B9C1F6C8C619730127 6 발행일: 2005/12/13

- 18/24 -

PATENT

REEL: 017198 FRAME: 0380

등기번호

002904

주관사회사와 협의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4) 단, 2)항의 산식에 의한 기발행주식수는 조정후 전환가격의 적용일 직전원말 현재와 주식수로 하며, 조정후 전환가격의 일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5) 상기 조정기준 사유로 인하여 계산된 전환 가격이 액면가에 미달할 경우 조정 전환 가격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2) 전환에 따른 발행할 주식의 종류 : ~~새먼전자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

3) 전환청구기간 : 사채발행일 3개월 이후 (2001년 5월 24일)부터 상환기일 1개월 전 일 (2004년 1월 23일)까지로 한다.

4) 전환청구를 접수할 장소 : 증권에탁원 증권대행부

5) 전환으로 발행될 주식의 최초 배당금 및 이자 : 전환으로 발행된 주식은 전환청구일이 속한 영업년도의 직전영업년도말에 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배당의 종류를 가지며, 전환청구일이 속하는 영업년도에 대한 이자는 소멸한다

6) 기타사항

가. 전환청구 절차 : 소정의 전환청구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날인하여 사채권을 첨부하여 증권에탁원 증권대행부에 청구한다.

나. 전환의 효력발생 시기 : 전환은 증권에탁원 증권대행부에 전환청구서를 제출한 때에 발생한다.

다. 유, 무상증자의 제한 : 전환권 행사 이전에 유, 무상증자를 실시함으로써 조정후 전환가격이 액면가에 미만이 될 경우에는 유, 무상증자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라. 전환사채 발행의 제한 : 전환권 행사 이전에 추가로 전환사채를 발행할 때는 전환 가격이 본 전환사채의 전환 가격보다 높아야 한다.

마. 미발행주식의 보유 : 사채권 소유자가 주식으로 전환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까지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에 전환될 주식 (미발행주식수)를 보유한다.

바. 전환청구에 의한 증자등기는 전환청구일이 속하는 말일로부터 2주간내에 한다.

사. 전환주권의 교부방법 : 전환청구로 발행되는 주식은 전환청구가 있는 원다 익일 20일부터 증권에탁원 증권대행부에서 교부한다.

아. 전환가격 조정사 공시방법 : 전환가격이 조정될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 증권업 협회, 주관사회사에 통보하며, 공고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19. 기타사항 : 전 각호 사항 외에 사채발행을 위한 총액인수 계약 체결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계 기관과의 협의 또는 조정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사항은 대표이사가 주관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2001년 06월 16일 변경 2001년 06월 18일 동기 >

1. 사채의 명칭 : 새먼전자 주식회사 제1회 무보증공모전환사채

2. 사채의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전환사채

3. 사채의 권면총액 : 금 4,642,700,000원

4. 사채의 발행가액 : 각 사채 권면금액의 100%

5. 각 사채권의 금액 : 10만원권 단일권종

6. 사채의 발행방법 : 공시채 등록법령에 의거 등록발행한다.

7. 사채의 이율 : 사채발행일로부터 2004년 2월 23일까지 연이율 2%도 함

(단, 만기시까지 미전환사채에 대해서는 연복리 8.0%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발급확인번호 9)40-ANJW-OMHV

00000230441039122010510103254321C5B9C1F6C8C619730127 6 발행일:2005/12/13

- 19/24 -

PATENT

REEL: 017198 FRAME: 0361

등기번호

002904

8. 원금상환방법과 기한 : 본 사채의 원금은 2004년 2월 23일에 원금의 119.64%를 일시에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9. 이자지급방법과 기한 : 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 익일로부터 원금상환 기일까지의 이자를 계산하며 아래 이자지급일에 각각 해당기간의 이자를 후급한다. 2001년 12월 31일, 2002년 12월 31일, 2003년 12월 31일, 2004년 2월 23일.
10. 자금의 사용목적 : 운영자금
11. 사채모집의 수탁기관 : 한양증권 주식회사
12. 주관사회사 : 한양증권 주식회사
13. 사채원리금 지급장소 : 중소기업은행 과천지점 및 해당지역 각 광역시와 도청 소재지 모점
14. 사채의 등록기관 : 증권예탁원
15. 사채의 청약일 : 2001년 2월 19일 20일
16. 사채의 납입일 : 2001년 2월 23일
17. 사채의 발행일 : 2001년 2월 23일
18. 전환에 관한 사항 : 본사채는 사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사채권면금액의 전액을 다음 각호의 조건에 따라 세안전자(주)의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 1) 전환의 조건
- 가. 전환비율 : 각 사채권면금액 ('2' 이상의 사채권으로 전환청구사에는 그 권면금액의 합산금액)을 전환가격으로 나눈 주식수와 100%를 전환 주식수로 하고 1주미만의 단수주는 그 단수주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환 주권의 교부시 증권예탁원 증권대행부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며, 단수주 배급의 해당기간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사채권면 금액의 일부에 대한 전환은 청구할 수 없다.)
- 나. 전환가격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아시아 결의일 전일부터 소급하여 코스닥 증권시장에서 성립된 보통주의 구주의 종가 (기세는 제외)를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한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종가중 높은 가격을 기준으로한 보통주 기준주가 4,230원의 100%에 해당하는 4,230원을 전환가격으로 하되 청약 3거래일전의 종가가 높을 경우 청약 3거래일전 종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동가격에 100%에 해당하는 가격을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그 전환 가격이 액면가액보다 낮을 경우에는 액면가로 한다.
- 다. 전환가격의 조정
- 1) 본 사채발행 3개월 경과일 (2001. 5. 23) 6개월 경과일 (2001. 8. 23) 9개월 경과일 (2001. 11. 23) 12개월 경과일 (2002. 2. 23) 및 18개월 경과일 (2002. 8. 23)을 기준으로 1개월 거래량 가중 평균가격, 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가격,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종가중 높은 가격이 직전 전환가격 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격을 전환가격으로 조정함. 단, 조정후 전환가격은 본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의 45% 이상이어야 한다.
- 2) 전환청구전에 당초의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를 하거나 기타

발급확인번호 9)40-ANJW-OMHV

00000230441039122010510103254321C5B9C1F6C8C619730127 6 발행일:2005/12/13

- 20/24 -

PATENT

REEL: 017198 FRAME: 0382

등기번호

002904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 조정후 전환가격

$$\text{기발행주식수} + \text{신발행주식수} \times (\text{1주당발행가격} / \text{사가})$$

조정전 전환가격 x

$$\text{기발행주식수} + \text{신발행주식수}$$

3)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권사회사와 협의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4) 단 2)항의 산식에 의한 기발행주식수는 조정후 전환가격의 적용일 직전일말 현재와 주식수로 하며, 조정후 전환가격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5) 상기 조정기준 사유로 인하여 계산된 전환 가격이 액면가에 미달할 경우 조정 전환 가격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2) 전환에 따른 발행할 주식의 종류 : 세인전자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

3) 전환청구기간 : 사채발행일 3개월 이후 (2001년 5월 24일)부터 상환지일 1개월전일 (2004년 1월 23일)까지로 한다.

4) 전환청구를 접수할 장소 : 증권에탁원 증권대행부

5) 전환으로 발행될 주식의 최초 배당금 및 이자 : 전환으로 발행된 주식은 전환청구일이 속한 영업년도와 직전영업년도말에 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배당의 효력을 가지며, 전환청구일이 속하는 영업년도에 대한 이자는 소멸한다

6) 기타사항

가. 전환청구 절차 : 소정의 전환청구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지입날인하여 시채권을 첨부하여 증권에탁원 증권대행부에 청구한다.

나. 전환의 효력발생 시기 : 전환은 증권에탁원 증권대행부에 전환청구서를 제출한 때에 발생한다.

다. 유.무상증자의 제한 : 전환권 행사 이전에 유.무상증자를 실시함으로써 조정후 전환가격이 액면가액 미만이 될 경우에는 유.무상증자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라. 전환사채 발행의 제한 : 전환권 행사 이전에 추가로 전환사채를 발행할 때는 전환가격이 본 전환사채의 전환 가격보다 높아야 한다.

마. 미발행주식의 보유 : 사채권 소유자가 주식으로 전환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까지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에 전환될 주식 (미발행주식수)를 보유한다.

바. 전환청구에 의한 중지등기는 전환청구일이 속하는 말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한다.

사. 전환주권의 교부방법 : 전환청구로 발행되는 주식은 전환청구가 있는 월의 익월 20일부터 증권에탁원 증권대행부에서 교부한다.

아. 전환가격 조정시 공시방법 : 전환가격이 조정될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 증권업협회, 주권사회사에 통보하며, 공고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매일경자신문에 게재한다.

19. 기타사항 : 전 각호 사항 외에 사채발행을 위한 총액인수 계약 체결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계 기관과의 협의 또는 조정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사항은 대표이사 주권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2002 년 03 월 13 일 변경

2002 년 03 월 20 일 등기 >

제1회 무보증공모전환사채

발급확인번호 9010-ANJW-OMHV

00000230441039122010510103254321C5B9C1F6C8C619730127 6 발행일:2005/12/13

- 21/24 -

PATENT 대법원

REEL: 017198 FRAME: 0383

등기번호

002904

2004년 2월 23일 전부상환

< 2004년 02월 23일 등기 >

전 환 사 채

제 1 회 무기명 부보증 미화 표시 해외 공모 전환사채

< 2005년 11월 02일 변경 2005년 11월 17일 등기 >

< 2005년 11월 04일 변경(착오발견) 2005년 11월 17일 등기 >

1. 전환사채의 총액

미화 일천오백만불(유에스디 15,000,000)

< 2005년 11월 02일 변경 2005년 11월 17일 등기 >

< 2005년 11월 04일 변경(착오발견) 2005년 11월 17일 등기 >

1. 각 전환사채의 금액

미화 오만불 또는 그 배수액

< 2005년 11월 02일 변경 2005년 11월 17일 등기 >

< 2005년 11월 04일 변경(착오발견) 2005년 11월 17일 등기 >

1. 각 전환사채의 납입금액

미화 일천오백만불(유에스디 15,000,000)

< 2005년 11월 02일 변경 2005년 11월 17일 등기 >

< 2005년 11월 04일 변경(착오발견) 2005년 11월 17일 등기 >

1. 본 사채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1. 전환의 조건

가. 전환권 행사가능 사채금액 : 발행 액면금액의 100%

나. 전환가액 : A, B, C 금액 중 큰 금액 = 3,647원

A : 전환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평균종가, 1주일 가중평균종가, 그리고 최근일 종가를 산술 평균한 가격

B : 최근일 종가

C : 청약일 3거래일전의 종가

다. 전환권 행사환율 : 미화1달러(USD1)당 1,045.10원

라. 전환권 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

마. 전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 : 각 전환사채 권면액에 전환권 행사환율을 곱한 후 전환가액으로 나눈 주식수를 전환권 행사 대상 주식수로 하며, 1주미만 단수주는 발행하지 않음.

바. 전환가액의 조정

(1) 주후 무상증자, 주식배당, 시가를 하회하는 유상증자, 주식의 분할 또는 합병, 자본의 감소, 합병,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 사채계약서상에 명시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전환가액이 조정될 수 있음.

(2) 2005년 12월 4일, 2006년 2월 4일, 2006년 5월 4일, 2006년 8월 4일, 2006년 11월 4일, 2007년 2월 4일, 2007년 5월 4일, 2007년 8월 4일, 2007년 11월 4일, 2008년 2월 4일, 2008년 5월 4일, 2008년 8월 4일(이하 "전환가액조정일")에 전환가액을 조정하고 다음의

A), B) 및 C) 중 높은 가격이 기존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A), B) 및 C) 중 높은 가격이

발급확인번호 90-0-ANJW-OMHV

00000230441039122010510103254321C5B9C1F6C8C619730127 6 발행일: 2005/12/13

- 22/24 -

PATENT

REEL: 017198 FRAME: 0384

등기번호	002904
------	--------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결정됨.

A)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당시 최초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위(1)에서 규정한 조정사유로

조정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발행주식의 액면가 중 높은 가격

B)(1) 전환가액조정일 전일부터 소급한 1개월 거래량 가중평균 증가

(2) 전환가액조정일 전일부터 소급한 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 증가

(3) 전환가액조정일 전일 증가 등 세 가격의 산술평균

C) 전환가액조정일 전일 증가

< 2005 년 11 월 02 일 변경 2005 년 11 월 17 일 등기 >

< 2005 년 11 월 04 일 변경(착오발견) 2005 년 11 월 17 일 등기 >

1.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기명식 보통주식

< 2005 년 11 월 02 일 변경 2005 년 11 월 17 일 등기 >

< 2005 년 11 월 04 일 변경(착오발견) 2005 년 11 월 17 일 등기 >

1. 전환청구기간

발행일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최종상환기일부터 역산하여 1개월이 되는 날(이 날을 포함한다)까지

< 2005 년 11 월 02 일 변경 2005 년 11 월 17 일 등기 >

< 2005 년 11 월 04 일 변경(착오발견) 2005 년 11 월 17 일 등기 >

신 주 인 수 권 부 사 채

1. 사채의 명칭 : 세인전자 주식회사 제1회 공모 무보증 해외 신주인수권부사채

2.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금액, 납입금액, 총액 : 미화 3,000,000불

3.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권면액 : 미화 5,000불

4.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내용

1)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식

2) 행사비율 : 각 사채 권면액의 100%

3) 행사가격 : 다음 A)와 B)중 높은 가격으로 결정

A) [이사회결의일 전일(2004년 11월 29일)부터 소급하여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등록시장 (KOSDAQ)]에서 성립된 보통주의 1개월 거래량 가중평균 증가, 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 증가 및 최근일 증가의 산술평균과 최근일 증가 및 청약일 3거래일전의 증가 중 높은 가액]

B) 액면가 [500]원

4) 행사환율 : 가격결정일 금융결제원이 고시한 대미환율로 추후 결정함.

5)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 :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권면액에 행사비율을 곱한 후 행사가격으로 나눈 주식수를 행사주식수로 하고, 1주미만의 단수주는 절사함.

6) 행사가격 조정 :

(1) 추후 무상증자, 주식배당, 시가를 하회하는 유상증자, 주식의 분할 또는 합병, 자본의 감소, 합병,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 사채 발행계획서상에 명시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행사가격이 조정될 수 있음.

(2) 발행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및 그로부터 매 3개월이 경과한 다음의 일자 (이하 "행사가

만급확인번호 90-0-ANJW-OMHV

00000230441039122010510103254321C5B9C1F6C8C619730127 6 발행일:2005/12/13

- 23/24 -

PATENT 대법원

REEL: 017198 FRAME: 0385

등기번호	002904
격조정일")마다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을 조정하되 다음의 A), B) 및 C) 중 높은 가격이 기존 행사 가격보다 낮을 경우 A), B) 및 C) 중 높은 가격이 새로운 행사가격으로 결정됨. A) 새로운 행사가격은 발행당시 최초 행사가격 (조정일 전에 위 (1)에서 규정한 조정사유로 조정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과 발행 주식의 액면가 중 높은 금액. B) 1) 행사가격조정일 전일부터 소급한 1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2) 행사가격조정일 전일부터 소급한 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3) 행사가격조정일 전일 종가 등 세 가격의 산술평균 C) 행사가격조정일 전일 종가 7) 신주인수권 행사기간 : 발행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최종상환기일 1개월 전까지 8) 신주인수권 행사로 발행된 주식의 최초배당금 및 이자 : 신주인수권 행사로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이나 배당금에 관하여는 신주가 발행된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말에 신주가 발행된 것으로 간주함. 9) 행사대금의 납입 : 현금납입 또는 사채 대용납입 10) 신주인수권만의 양도 여부 : 신주인수권만 양도하는 것이 가능함 11) 신주인수권 행사를 받을 장소 : 증권예탁원 < 2004 년 12 월 16 일 등기 >	

신 주 인 수 권 부 사 채	
12. 주식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 총액 : 미화1,750,000불	< 2005 년 08 월 02 일 변경 2005 년 08 월 03 일 등기 >
12. 주식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 총액 : 미화1,500,000불	< 2005 년 09 월 12 일 변경 2005 년 09 월 14 일 등기 >
12. 주식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 총액 : 미화750,000불	< 2005 년 11 월 14 일 변경 2005 년 11 월 17 일 등기 >

회사성립연월일	1990 년 01 월 19 일
----------------	------------------

등기용지의 개선 사유 및 연월일	2001 년 02 월 23 일 등기
상업등기처리규칙 부칙 제2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등기로부터 이기 수수료 1,400원 영수함	

판활등기소 : 수원지방법원 안양등기소 / 발행등기소 : 수원지방법원 과천등기소

등기부 등본(말소사항 포함)입니다. [다만,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는 등기사항과 지배인(대리인), 지점(분사무소)의 등기사항을 생략하였습니다.]

서기 2005년 12월 13일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공무원 박용진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만소(변경, 정정)된 등기사항입니다.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http://www.iros.go.kr>)에 접속하여 등기부발급확인 메뉴를 통해 발급확인번호로 내용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0000230441039122010510103254321C5B9C1F6C8C619730127 6 발행일:2005/12/13

발급확인번호 9040-ANJW-OMHV

- 24/24 -



PATENT

RECORDED: 01/17/2006

REEL: 017198 FRAME: 0386